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염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078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.

발 의 자 : 염태영・백혜련・윤종군
이해식・조정식・박용갑
이연희・김영진・복기왕
신정훈・손명수・정일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,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「지방재정법」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을 추가하여,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지방채 발행의 제한)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. 1. ~ 18. (생 략) <신 설>	제11조의2(지방채 발행의 제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 1. ~ 18. (현행과 같음) 19.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